

2. 시행시기

가. 이 지침은 '93. 5. 1부터 시행한다.

나.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은 주택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.

주택전산화현황

1. 추진개요

○ 추진배경

- 당첨자, 주택조합원등의 주택소유를 확인하여 부정당첨자를 색출함으로써 가수요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
- 추진경위
- '91. 3. 20 : 6대도시 및 경기도의 주택전산화 완료
- '91. 9. 7 : 전국 주택전산화 완료
- '92. 8. 10 : 주택양도자료 입력

2. 전산망 운영

○ 입력자료

- 시·도의 재산세자료중 7개항목(입력주택수 : '92년 7,478,328호)
 - * 7개항목 : 소유자의 주소, 성명, 주민등록번호
건물의 소재지, 구조, 형태, 면적
- 국세청의 주택양도자료('86~'91. 4까지의 2,660,768건)

○ 입력자료의 활용

- 분양 및 임대주택 당첨자 확인(국민주택, 민영주택)
- 주택조합원의 자격확인
- 양도소득 및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

3. 전산검색실적

○ '92년말 까지 513,038세대를 검색하여 6,786명의 부정당첨자 적발

년도	전산검색 세대수	부정당첨자			
		계	무주택 위장	1세대 2주택	일정규모 초과주택
계	513,038	6,786	5,601	1,043	142
'91	188,620	2,360	1,841	516	3
'92	324,418	4,426	3,760	527	139